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7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박홍배 · 최혁진 · 박정현
민병덕 · 이재정 · 서영교
박희승 · 황명선 · 문대림
박 정 · 김우영 · 윤준병
전용기 · 윤후덕 · 염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애 등의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애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애 등을 포괄하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장함(안 제2조).
- 나.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홍보 및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실질적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애 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로사등”이란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또는 업무에 있어서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부하 또는 심리적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환 내지는 심장질환 혹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2.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국민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및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협조)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과로사등 방지대책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야간근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근로, 장시간 노동 등 과로사 발생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 직무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진단 및 평가 도구 개발
3. 과로사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관리기법 개발
4.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등

제10조(교육·홍보 및 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 과로사등 방지대책의 조정과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노사단체 추천자, 과로사 예방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2조(사업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제도개선을 한 사업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